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등의 신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신청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법률 개정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의 인력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장기요양 인정, 갱신 신청, 등급 등의 변경 신청의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서나 행정전자서명을 통한 신분 확인의 근거 마련

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등 기준 마련

- 1)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특정 재가급여 이용 및 제공 관행을 지양하고, 장기요양 수급자의 필요와 욕구를 반영한 재가급여의 복합 이용을 통해 수급자의 자존능력 유지하여 지역사회 지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다종의 재가급여를 통합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 기관에 관한 인력 등 기준 제시
- 2) 인력 등 기준은 제공하는 급여의 적정 품질 유지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적용 중인 기준(「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 별표 10)을 준용
- 3) 통합재가서비스 도입 취지, 제도의 효과성 확보 위해 수급자 욕구 평가(사정), 급여의 적정 제공 및 조정(연계) 등 업무 명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 및 제23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정 등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제23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

② 제1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단이 선정하는 장기요양기

관으로 한다.

별표 1의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0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정 등의 신청) ① 법 제13조제1항,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장기요양인정의 갱신신청 또는 장기요양등급 등의 변경신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나 「전자정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정전자서명을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분증 및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u>
<u><신 설></u>	<u>제23조의2(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 등) ①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시설, 운영 등의 기준은 별표 1의5와 같다.</u> <u>② 제1항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공단이 선정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한다.</u>

통합재가서비스 제공 장기요양기관의 인력 및 시설, 운영 기준

(제23조의2 관련)

1.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이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이하 “가정방문형”이라 한다) 또는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이하 “주야간보호형”이라 한다)를 함께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인력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기준은 아래 각 호의 기준을 제외하고는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에 의한다.

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에 따라 겸직할 수 있다.

나.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의료법」상 간호사를 1인 이상 둘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개별 수급자에 대한 적정 급여 제공여부 확인 및 평가, 평가 결과를 반영한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 재가급여 간 연계, 조정 등 수급자의 복합욕구를 충족하고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사를 두어야 한다.

3. 종사자 자격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직원의 자격기준에 의한다.

4. 시설기준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기준은 제공하는 재가급여의 종류에 따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9의 기준에 의하며, 통합재가서비스 만을 위한 별도의 사무실을 설치할 수 있다.

5. 운영기준

가. 수급자의 욕구 및 기능 상태를 반영하여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의 방문요양은 월 4회 이상, 다목의 방문간호는 월 2회 이상,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법 제23조제1항제1호 가목의 방문요양과 라목의 주·야간보호를 각각 월 1회 이상 제공하여야 하며, 가정방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필요시 수급자에 대한 목욕서비스와 간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통합재가 수급자에 대해 월 1회 이상 급여 제공시간 중 가정을 방문하여 적정 서비스 제공여부를 확인, 기록하며, 매월 수급자 욕구사정 및 수급자별 급여제공계획을 수립하고 기록하는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단, 주야간보호형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주·야간보호를 월 10일 이상 이용하는 수급자에 대해 가정방문에 갈음하여 주·야간보호 제공시간 중 급여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의 선정절차, 운영 등 세부사항은 공단이 정한다.